

# 2020년 지식서비스산업융합 발전 유공자 포상 공고안

## I 포상 개요

◆ 2020년도 지식서비스산업융합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(개인, 기관(기업))를 선발, 사기양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포상을 시행

□ 포상명 : 2020년 지식서비스산업융합 발전 유공자 포상

□ 포상 목적

- 세계 경제는 인문과 기술, 산업과 문화·예술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는 ‘산업융합의 시대’로 급변
- 글로벌 융합화 추세에 대비, 그간 산업 현장의 융합 활동(포럼), 산업융합 전문인력 분야 등에 기여가 큰 유공자에게 포상 수여

□ 훈격 :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

□ 포상 종류 및 규모

- 포상 종류 : 공적상(개인표창 또는 단체표창)
  - \* 공적상 :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또는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
- 포상 규모 : 8점

□ 포상 원칙 : 포상관련 법 및 규칙 등을 원칙으로 함

- \*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및 상훈법 제4조(중복 수여의 금지), 동법시행령 제17조 2항(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) 그 외 관련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에 준함

□ 포상 대상

-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통상자원 행정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, 일반국민(외국인 포함), 기관·단체 등

□ 자격 기준

- 표창 추천일 기준, 수공기간 3년 이상인 개인 또는 단체
  - \* (공무원) 실 근무기간 3년 이상, 타기관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
  - \* (국 민)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, 산하기관 임·직원 등 포함
  - \* (단 체)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

□ 포상 추천제한(참고 참조) : 공무원 및 국민표창(개인표창), 단체표창(기관 또는 단체 외)

## III 포상후보 선정 절차

① 후보자 발굴 및 추천

- (추천 대상) ‘일반\* 포상 대상’ 및 ‘산업진흥정보서비스융합포럼’\*\* 대상으로 공모 추천을 통해 유공자 후보 발굴
  - \*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통상자원 행정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, 일반국민(외국인 포함), 기관·단체 등
  - \*\* '20년 지식서비스기반사업으로 운영 중인 ‘산업진흥정보서비스융합포럼’ 분과(에듀테크분과, 산업혁신분과, 컨설팅분과)

- (배정 규모) 포상 후보자 발굴 및 심사를 거쳐, 총 8점 중 산업진흥정보서비스융합포럼 2점, 일반 포상대상 6점 규모로 배정

② 1차 심사 평가

- (평가 방향) 융합 新산업 비즈니스 발굴 및 사업화 추진, 산업창의융합 문화 보급·확산, 창의융합 인재양성, 국가 정책 추진 기여 등 종합적으로 고려
- (심사 항목) ‘공적기간’, ‘전문성’, ‘업적도(기여도)’, ‘발전(파급 효과)성

- (심사 방식) 내·외부 평가 위원을 통한 서면 평가 추진
  -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'공적 사항' 기반 평가
    - \* 심사위원 : 외부위원 등 5인 내외 구성

### ③ 2차 심의 평가

- 1차 심사평가 후, 우선순위 8인에 대해 최종 후보 심의 추진
  - \* 1차 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자의 적절성 판단 및 선정

### ④ 적격여부 판단

- 범죄, 산재, 불공정 등 관련 제한사항\* 검증(산자부)
  - \* 산업재해, 공정거래법위반, 범죄경력, 임금체불사업주,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, 표창 기 수여여부 등

### ⑤ 장관표창 공적심의회 및 수여

- 장관 표창을 위한 공적심의회 개최(산자부)
- 포상 수여\*(지식서비스융합컨퍼런스( '20.12월3일예정) 온라인 개최시 수여 예정)
  - \*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시 방역 강화로 추진 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 예정

## IV 기타 사항

### □ 신청(추천)서 접수

- 신청 기간(접수마감일시) : [2020. 10. 6.\(화\) ~ 11. 3.\(화\), 17:00](#)
  - \*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([www.nipa.kr](http://www.nipa.kr)) 공지사항 '유공자 공고안 및 서식' 다운로드
- 신청 서식 : [첨부] 참조
- 신청(추천)서 접수처 :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기반팀
  - 연락처 : (Tel) 043-931-5671 / (E-mail) [hsim@nipa.kr](mailto:hsim@nipa.kr)

- 접수방법 : E-mail

- \* 관련서류를 작성하시어 **11월 3일(화), 17:00까지 E-mail로**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\* 직인, 서명 등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E-mail로 송부하여 주시고 원본은 추후 별도로 요청할 예정입니다.

### □ 제출 서류

#### ○ (개인 표창부문 : 국민표창, 공무원표창)

	제출 서류	비고	
1	신청서(추천서)	[첨부1] 서식참조	필수 제출서류
2	공적조서	[첨부2] 서식참조	
3	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(표창후보용)	[첨부3] 서식참조	
4	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	해당자에 한함	

#### ○ (단체 표창부문 : 기관 또는 단체, 기업 등 단체표창)

	제출 서류	비고	
1	신청서(추천서) 외	[첨부4] 서식참조	필수 제출서류
2	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(표창후보용)	[첨부5] 서식참조	
3	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	해당자에 한함	
4	사업등록증(기업 및 단체)	필수 제출서류	
5	2017년~2019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	비영리기업 및 단체, 외감법인이상인 경우 생략	

### ○ 참고사항

- 신청(추천)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

### □ 유의사항 의

-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,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,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
-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,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를 구함
-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가. 공무원포상

\* 공공기관,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도 적용

1)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

\* 창안상,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
2) 휴직중인 자

3)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,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(정부포상지침 중 3.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), 수사 중인 자

4)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

5)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
6)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7)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
※ **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(재직공무원)**

-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
- 다만, 주요비위(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)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

※ **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(퇴직공무원)**

-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,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
- 다만, 주요비위(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)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
-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

나. 국민포상

1)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(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)

2)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(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)

\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3)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

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
\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
\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4)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
5)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그 임원

\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
6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개인)

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

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\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- 7)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- 8)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9)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  - \*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(정부포상지침 중 2.일반국민 포상과 동일)

**다. 단체표창**

- 1) 표창추천일 기준,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
- 2)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3)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민간단체에만 적용)
  - \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4)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민간단체에만 적용)

- 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  - \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-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  - \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5)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 인 상장회사

6)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)

\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
7)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의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단체)

- 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- 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  - \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8)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9) 기타 사회적 물의 외

**※ 장관표창 취소 및 기타 사항외**

- 이외에 “2019년 정부포상 업무지침”상 결격 사유자는 추천 제한함
-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,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,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
- 향후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 전후에 관계없이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
-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재 유무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